예 산 총 칙

2021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653,595,943	19,607,878
일반회계	639,012,257	19,170,368
특별회계	14,583,686	437,511
기타특별회계	14,583,686	437,511
주차장특별회계	11,260,329	337,810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1,313,540	39,406
지하수관리특별회계	1,941,500	58,245
기반시설특별회계	44,617	1,339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23,700	711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'세입·세출예산안'과 같다.

제 3 조 2021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.

제 4 조 2021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해당없음.

제 5 조 2021년도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.

제 6 조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3,5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(1)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과목 (2) 공공요금 및 제세

※ 예산서 재원표기
[국] 국고보조금, [균]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, [기] 국가기금보조금, [시] 시비보조금
[특] 특별교부세, [교] 특별조정교부금, [구] 자체재원, [채] 지방채